

제227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심사보고서

(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)



2019. 7. 17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전문위원

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 1542호
----------	---------

2019. 7. 17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일 자 : 2019. 7. 3.
- 나. 제 안 자 : 광진구청장
- 다. 회 부 일 자 : 2019. 7. 8.
- 라. 상 정 일 자 : 2019. 7. 15.

2. 기금명 : 자활기금 (소관부서 : 어르신복지과)

3. 제출사유

자활사업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용자지원을 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을 제출함.

4. 주요 변경내용

- 자활기금: 지출계획 편성목 변경 20,000천원[예치금 → (민간)용자금]
- “자활사업 용자지원” 을 위한 용자금 편성에 따라 운용 계획 변경

구분(편성목)	2019년(변경전)	2019년(변경후)	증감
합 계	1,227,902천원	1,227,902천원	-
민간경상사업보조	19,000천원	19,000천원	-
민간자본사업보조(자체계원)	5,000천원	5,000천원	-
민간용자금	-	20,000천원	20,000천원
예치금	1,173,902천원	1,153,902천원	△20,000천원

5. 큰 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○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」 제12조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」

제12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거나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6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의안번호 제1542호 『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』은 2019년 7월 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임.
- 우선, “자활기금”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」¹⁾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」

제18조(자활기금)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근거하여,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자활기금을 설치한다.
-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1. 구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,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
 2.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
 3.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
 4.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
 5. 기금운용 수익금
-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 1.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차액 보전
 2.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 4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
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
 - 나.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
 5.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(단,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한다)
 6.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(2020. 12. 31.)으로 한다.

1)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」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·시설 건립기금, 중소기업육성기금, 자활기금, 노인복지기금, 양성평등기금,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, 옥외광고발전기금, 도로 굴착복구기금, 재난관리기금, 식품진흥기금 등 10개 종류의 기금이 규정되어 있으며, 이와 별도로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조례」가 있어 광진구에는 총 11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 중에 있다.

○ 다음으로, 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.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및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」 제12조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,
- 본 변경(안)의 지출금액 변동액은 20,000천원으로 정책사업 “저소득층 자활지원”을 위한 지정 지출금액 54,000천원의 10분의 2(10,800천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변동내역이라 볼 수 있음.

○ 끝으로, 본 “자활기금” 운용계획 변경(안)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- 서울시 자활기금 임대보증금 용자 사업은 현재 3개의 사업(아래 표 참조)이 있으며, 그 중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의 그린빨래방(대형세탁물 수거, 세탁 및 배송) 사무실 임대 보증금 용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로 회수되는 보증금 용자금 재원 확보를 위해 “예치금” 2천만원을 “용자금” 2천만원으로 기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에 추가 편성하게 된 사안으로 원활한 “자활사업 용자사업” 추진을 위한 적절한 기금 운용 변경 내용이라고 사료됨.

※ 현재 서울시 자활기금(임대보증금) 용자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업명	주소	용자액	용자일	상환일	비고
자활사업단	그린빨래방	답십리로392-1 (중곡3동)	20,000	2019.7	2021.7	<변경대상>
자활사업단	쌍쌍자전거 (자전거포2호점)	뚝섬로51길57 (자양1동)	10,000	2015.12	2019.12	연장 가능 (1회)
자활사업단	더나눔커피	동일로 28 (자양4동)	30,000	2015.2	2021.2	만기

※ 현재 광진구 자활기금(임대보증금) 용자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업명	주소	용자액	용자일	상환일	비고
광진지역 자활센터	자활센터	자양로 247 (구의2동)	500,000	2013.4		무이자
자활사업단	소담	뚝섬로62길 44 (자양2동)	20,000	2015.12	2019.12	연1%
	마을자전거	자양로19길 70 (자양1동)	30,000	2017.4	2021.4	연1%
자활기업	희망나르미	뚝섬로24길 69 (자양4동)	30,000	2018.9	2020.9	연1%

- ▶ 서울시와 광진구 용자조건 동일
- 2년 거치 일시 상환, 2회 연장 가능(자활센터는 기한 없음)

○ 종합 검토의견으로

- 이번 『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』은 “자활기금”에 관련한 내용으로 광진구 자활기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근거하여 자활사업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,
- 서울시 자활기금 용자금 상환 기일 도래에 따른 보증금 용자금 2천만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예치금 2천만원을 민간용자금에 추가 편성함에 있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 변경하는 경우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에 해당되어 제출된 안건으로
- 자금의 효율적 집행 및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8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9. 심사결과

- 2019. 7. 15. 재석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

10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